

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신청자 모집 공고

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위생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한 식품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6월 10일

임 실 군 수

□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
- 사업기간 : 2025. 1월 ~ 12월 ※ 연중 수시(예산 소진 시까지)
- 사 업 비 : 5억원(도 100%)
- 융자대상 : 관내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
- 사업내용 : 식품위생업소 영업장·화장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
 - (대출금리) 연1%(위탁수수료)
 - (대여기간) 6년(2년거치 4년균등 분할상환)
 - (지원금액) 20~220백만원 한도 내 융자지원

□ 융자대상

-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
 - 단란주점·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이나,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
- 모범·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

※ 융자대상 우선순위

-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, 식품 제조·가공업소
- 모범음식점·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
-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

□ 제외대상

- 영업허가(신고)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휴·폐업 중인 업소
-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·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업종별 용자한도액을 용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
- 그밖에 행정 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

□ 용자 한도 및 조건

(단위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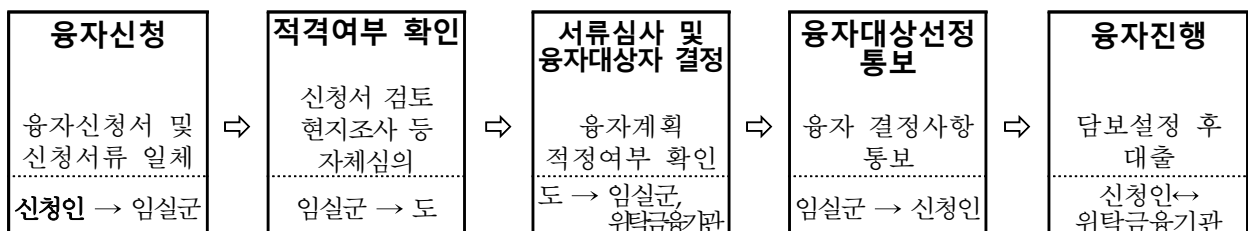
구 분	용자대상 업소	용자한도	용자조건	
			이율	상환기간
영업장 시설개선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100	연 1% (위탁수수료)	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
	식품접객업 (단란, 유흥주점 제외)	50		
	위탁운영집단급식소			
HACCP 시설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100		
육성자금	모범음식점	50		
	향토음식점			
화장실 시설개선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20		
	식품접객업			
	위탁운영집단급식소			

* (시설개선자금)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,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

* (육성자금)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

□ 용자절차

- 용자신청 : **임실군청 청소위생과**
 - 구비서류 : 식품진흥기금 용자신청서
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(공사견적서 포함), 용자신청 이행확약서
영업신고증(허가증) 사본, 사업자등록증 사본
모범·향토음식점 지정증(육성자금에 한함),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
- 용자절차



※ 용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

- 위탁금융기관 : 전북은행
- 용자사업 완료
 -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임실군청 청소위생과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
 - 관계서류 : 시설개선 완료신고서, 시설개선 완료사진(시설개선 공정별 전·후), 용자금 지출 증빙서류(세금계산서, 지출 영수증 등)

□ 용자금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

- 용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
-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
-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·향토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
-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항

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(제5조제1항제1호 관련)

신청인	① 대표자 성명		② 생년월일	
	③ 업소명		④ 전화번호	
	⑤ 주소(소재지)		⑥ 사업자등록번호	
사업체규모	⑦ 영업장총면적	m ²	⑧ 자산총액	천원
대상업종	⑨ 업종	<input type="checkbox"/> 식품제조·가공업 <input type="checkbox"/> 휴게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제과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범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향토전통음식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급식영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란주점 <input type="checkbox"/> 유흥주점		
자금 융자 신청 내역	⑩ 실소요금액		⑪ 융자신청금액	

위와 같이 「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.

시군확인	
확인자	
직	성명
(인)	

20 년 월 일
신청인 (인)

지정은행확인	
은행명	
대출	<input type="checkbox"/> 가 능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가능
확인자	(인)

시장·군수 귀하

<구비서류>

1.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
2.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
3. 영업허가증 사본
4. 사업자등록증 사본
5.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

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(제5조제1항제2호 관련)

신청인	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	③ 업 소 명		④ 주소(소재지)	
시설현황 및 사업계획	⑤ 영업장총면적	m ² (평)		
	⑥ 계 획 내 용			
자금용자 신청내역	⑦ 실소요금액	⑧ 용자신청금액	⑩ 비 고	

위와 같이 「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시장·군수 귀하

용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(제5조제1항제4호 관련)

용자이율 : 연리 1%(용자금리 0%, 수수료 1%)

상환기간 : 6년(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)

상환방법 :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고지사항

○ 「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용자받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용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(조기상환 등)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.

- 용자금을 수령 후 용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용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용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-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대출 당시의 관할 시·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. 단, 식품제조·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·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.
- 육성자금의 용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
-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용자를 받았을 때
-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성 명(업소명)

(서명)

시설개선 완료신고서(제7조제5항 관련)

신고번호		업 소 명		대 표 자	
				신 청 자	
소 재 지				전화번호	
용자금액	원	신 청 일 (시·군청)	20	대 출 일 (수탁금융기관)	20
용자및상환조건	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(연 %)				
용자금의 용도	영업장시설개선(), 화장실시설개선(), 육성자금()				
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					
공사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까지 (개월)				
개·보수 내용	※ 개략 기재				
착 공 일	20 년 월 일				
완 공 일	20 년 월 일				
시공 업체명					
<p>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 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대표자 (인)</p> <p>전라북도지사 귀하 시장·군수 귀하</p>					
첨부서류	1. 시설개선 완료사진 : 시설개선 공정별 전·후 사진 2. 용자금 지출 증빙서류 : 각 1부 - 세금계산서,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				